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정부(행정안전부) 정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오산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나열함(안 제6조).
- 라.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운영현황 점검과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7월 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2호
----------	-------

발의년월일 : 2022년 7월 7일

발의의원 : 이상복 의원

찬성의원 :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전예슬 의원

## □ 제안이유

- 정부(행정안전부) 정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오산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나열함(안 제6조).
- 라.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운영현황 점검과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별첨

##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오산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신청 또는 동장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련 정보를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령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의 운영현황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 ④ (생략)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I 목적

-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 II 지정(평가) 기준

### 1 가격 기준 (45점)

- 가격 수준 : 해당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20점)
  - \* 해당 지자체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15점)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10점)

###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30점)

### 3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10점, 차등배점)
- 운영 및 시설 부문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 (각 5점)

\* 기준별 세부항목은 붙임2 평가표 참고

### 4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5점)

### 5 가점 부여 기준 (10점)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8점)
- 최근 3년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2점)
  - \* 정부시책 반영에 따른 사회적 가치 반영으로 배점조정

▷ 평가표(붙임 2)에 의거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 Ⅲ 지정 절차

- 1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2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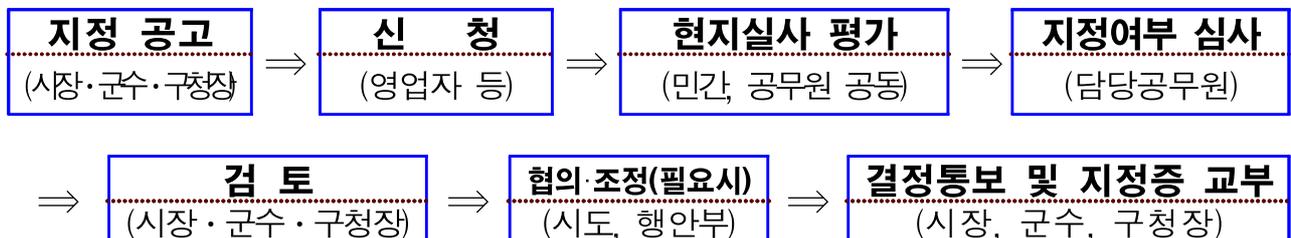
####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 3 (현지 실사·평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4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도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를 조속히 교부할 것.

#### < 지정 절차 >



- 5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후, 해당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업소 홈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IV 지정 업체수 및 지정시기

### ① (지정 업체수) 해당 지자체 관내 업체의 3% 이내

※ 무분별한 지정은 향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비율을 적성선으로 유지

### ② (지정 주기) 연 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지정도 가능

※ 매년 6월말 착한가격업소 실태조사 후 일제정비 추진 및 결과보고(행안부)

## V 사후 관리

### ① (정기 재심사) 시도 반기별 실시

- (절 차)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신청 업소 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여부확인 후 재지정

### ② (수시 재심사)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대 상) 지역별 평균물가보다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절 차) 「현지실사 평가」 생략 가능
- (기 능)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 ③ (지정 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 붙임 2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합이 7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 당해 시·군·구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승계는 변경 소재지 지자체의 기준을 따름

### ④ (지정 취소 후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 VI

##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

### ①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 (지역신보)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일반보증 85%), 보증수수료 0.2%p 감면(일반보증 1.2%)
- (신보)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 이내)배제, 보증수수료 0.1p% 감면(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 ~ 3%) 우대

### ② (행정 지원) 정책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행안부) 홈페이지 홍보, 오프라인 홍보, 우수사례 수집·전파, 재정인센티브, 포상수여 등
- (기재부) 착한가격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유공포상에 포함
-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 추천(매년 말)
- (지자체) 소비자의 이용제고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시군구 소식지에 우수사례 소개, 지자체 홈페이지 및 SNS 활용 홍보
  - 지역별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발전방안 공유
  - 위생용품 지원,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

▶▶▶ **상기 정책 외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붙임 1

##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2017.6.30. 기준)

(생략)

## 붙임 2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

□ 점검표 (업소명 :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현행(배점)	개선	
<b>총 점</b>			<b>100</b>	<b>100</b>	
<b>※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b>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위생모범 업소여부 (○, ×)	위생모범 업소여부 (○, ×)	
가격 기준 (45점)	가격수준 (2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25	20
			평균가격 미만(5~10%)	20	15
			평균가격 이하(5%이하)	15	10
			업소가격 > 평균가격	지정제외	지정제외
	가격안정 노력(15점)	가격인하	1년 내	25	15
			1년 이상	20	13
		가격동결	1년 미만	15	11
			6개월 미만	10	9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30% 이상	10	10
20%-30%			8	8	
10%-20%			5	5	
위생· 청결 기준 (30점)	주 영 업 시 설 (10점)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5	5	
		위생복 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5	5	
	매장 내 (10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10	10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5	5	
	건물 등 환경(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5	5	
품 질 서비스 기 준 (20점)	이용만족도 (10점)	업소 이용 후 이용전반에 대한 친절도 및 만족도		상 10 중 5 하 -	
	운영 (5점)	업소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상태, 냉·난방 가동 등		5	
	시설 (5점)	이용안내문, 표지판, 이용편의시설 구비 여부		5	
공공성 기준 (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행 여부(5)	모두 이행	5	5	
		일부만 이행	3	3	
		이행사항 없음	0	0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 가점 부여 (10점) >

분 야	배점	평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3년이내)	8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중앙정부기관, 자치단체 등 표창	2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 붙임 3

##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방법

#### □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기준의 합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 기지정 업소의 재심사

- 신규 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 실시

#### < 적격여부 심사표 >

분야	세부 점검 기준		적격여부	비고 (사유 일시 등)
기준 미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업소가격 > 평균가격)		부적격	
	점검결과,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품질·서비스기준 합의 평점이 총 10점 미만		부적격	
폐업	지정 업소가 폐업(단, 업소명 변경은 제외)		부적격	
자진 취소	자진취소 희망 (업주가 자진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부적격	
기타	휴업 기간	1개월 이상	부적격	
	행정 처분(2년 이내)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부적격	

- [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 / 지역단위 불문 선정배제](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검색)

#### ○ (유의 사항)

-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지정 취소
- 비외식업의 경우 점검기준 평점확인
- 지정 취소 확정 후, 인증 표찰 회수 및 인센티브 제공 중단 조치
-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D/B 현행화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관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odprice.go.kr/manage>